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907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 출 일 : 2024년 5월 27일
라. 회 부 일 : 2024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대관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다. 대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라. 대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마.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가결)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권고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감면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

- 반영결과: 제5조 관람료 감면 관련하여 권고내용 포함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적정(협의 완료)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3. 7.~ 3. 26.)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재산으로서 서울디자인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DDP’)'의 이용 및 대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제정조례안은 총 20개의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1조~제3조)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설의 이용(안 제4조~7조), 대관의 신청 및 허가(안 제8조~제12조), 대관료(안 제13조~제15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등 대관심의위원회(안 제16조~제19조),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제정 조례안의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시설", "대관", "대관자" 등 용어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관리·운영 시 수행해야 할 책임 부과
제4조(시설 이용의 원칙)	무료를 원칙으로하되 행사등을 개최시 관람료 징수가능
제5조(관람료 면제)	관람료 면제 대상 명시
제6조(주차요금)	부설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부과·징수
제7조(이용의 제한)	이용의 제한행위 명시
제8조(대관 신청)	대관신청 방법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9조(대관 제한)	대관 제한사항 명시
제10조(대관 허가)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 허가
제11조(대관 허가 취소)	대관허가취소 및 중지사항 명시
제12조(대관자의 의무)	대관자의 의무사항 명시
제13조(대관료)	대관료 부과·징수 기준
제14조(대관료 감면)	대관료 감면사항 명시
제15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대관료 납부 및 반환 기준
제16조(위원회 설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대관에 관련 사항 결정에 필요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명시
제17조(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회 운영)	
제19조(수당)	
제20조(관리·운영의 위탁)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사항
부 칙	공포한날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검토 내용

“입법취지 및 필요성”

- 이번 제정조례안은 서울시(감사위원회)의 기관운영 감사결과(‘23.02.24.) 서울디자인재단(이하 ‘디자인재단’)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채 DDP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DDP 시설 관리 및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디자인재단은 그동안 조례상의 근거 없이 서울시와 체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재산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이하 'DDP 위·수탁 협약서')와 디자인재단의 「DDP 운영 규정」
및 「DDP 대관 규정」 등을 근거로 서울시 행정재산인 DDP의 일부
공간을 대관시설로 하여 시간별·횟수별로 사용료를 정하고 대관신청·심
사를 통해 사용자방식으로 운영해왔음

- 「지방자치법」 제161조¹⁾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6조²⁾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
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DDP의 설치·사용료·위탁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 또한, 이와 관련한 서울시(법무담당관) 자문 결과 DDP 사용료 규정을 위
해 기존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DDP 관리·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붙
임1)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이번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1)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
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
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주요 조문별 검토”

①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것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밝힘으로써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³⁾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번 제정조례안의 목적에 공공시설인 DDP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②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이라 한다) 내의 컨벤션, 전시관 등으로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2. “대관”이란 행사, 공연, 전시 등(이하 “행사등”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정기대관: 다음 연도 및 5년 이내 행사등의 일정 확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
 - 나. 수시대관: 정기대관 지정 이후 잔여일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대관
3. “대관자”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안 제2조는 “시설”과 “대관” 등 용어 정의에 관한 것으로, 안 제2조제1호의 “시설”은 DDP 내의 컨벤션, 전시관 등으로 안 제2조제2호에

3)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따라 “대관”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하며,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정의’ 규정은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조례를 시행하려는 것인 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 둠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③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등의 개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임
- 다만, 안 제3조제1항에서 시장은 DDP등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제정조례안에는 그 설치 목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의 대관 등 관리·운영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DDP 설치 목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특히, 지난 2014년 DDP 개장 이후 서울시는 대자재단에 DDP 재산 관리를 위탁하여 ‘디자인·패션산업의 발신지’로서의 역할 담당을 목표로 운영해 왔으나, 2024년부터 DDP를 디자인정책관과 경제정책실이 디자인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 각각 분할 관리·위탁하게 되면서

DDP의 설치 목적과 정체성, 시설의 이용 방향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 하였으므로, DDP의 설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 안 제3조제2항에서 공공시설물인 DDP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시설이용자에게 균등한 이용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공공 건축물인 DDP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판단됨

④ 시설 이용의 원칙(안 제4조)

제4조(시설 이용의 원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 또는 대관자가 행사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안 제4조는 DDP등의 시설 이용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시설인 DDP가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또는 대관자가 개최하는 행사 또는 전시등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이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⁴⁾에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DDP의 이용에 대한 관람료를 조례상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됨

4)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람료 면제(안 제5조)

제5조(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1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7.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9.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2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21. 그 밖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안 제5조는 안 제4조에 따라 시장 또는 대관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

으로, 안 제5조의 관람료 면제 대상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관리·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및 관람료 면제 조항과 유사하게 규정(붙임2)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5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감면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예우보상 지원 중 ‘고궁·공원 등의 이용지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면 대상과 동일하며, 그 밖의 감면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은 개별 법령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적합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5조제21호에서 그 밖에 DDP등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관람료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기준 등을 정할 때는 형평성에 반하거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⑥ 주차요금(안 제6조)

제6조(주차요금)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6조는 안 제4조에 따라 DDP등의 시설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DDP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DDP 부설주차장 이용시 디자인재단의 「DDP 주차장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주차요금이 부과·징수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함
- 디자인재단은 「DDP 주차장 운영규정」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1급지 요금을 DDP 주차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⁵⁾ >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요금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8,0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 개별주차장 1일 주차요금은 1시간 환산요금의 6배를 적용하며,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9. (생략)

⑦ 이용의 제한(안 제7조)

제7조(이용의 제한)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1. 취식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안 제7조는 DDP등의 이용에 제한을 두는 금지 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공공시설 이용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며, 사회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함

○ 현재 DDP등의 이용 제한은 「DDP 운영규정」 제21조6)에 근거하여

6) 「DDP 운영규정」 제21조(행위의 제한) ① DDP 내에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이뤄지고 있는 바,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규정 내용을 준용하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이용 제한 규정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⑧ 대관 신청 및 허가(안 제8조~안 12조)

-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는 DDP 시설의 대관 등에 관한 조항으로, 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서울시와 디자인재단이 체결한 「DDP 위·수탁 협약서」와 디자인재단의 「DDP 대관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용허가 방식으로 DDP 공간을 대관해왔던 것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기 위해 DDP의 대관신청, 제한 및 허가 등에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됨

제8조(대관 신청)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대관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 접수기간까지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 일정이 비어있을 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대관 제한) 시장은 대관 신청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등
2. 특정 종교단체가 개최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등
3. 특정 정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등
4. 그 밖에 친목모임 등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사등

제10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정기대관은 대관 신청서 접수기간 만료일부턴 15일 이내에, 수시대관은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대관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5.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6. 문화재 보호 및 보안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② 제1항에서의 대표이사 권한은 관리책임자가 대신하여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신청이 1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대관을 허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자에게 그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료를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대관자가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의 유지와 관련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관받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안된다.
- ④ 대관자는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안 제8조는 DDP의 대관 신청에 관한 것으로 DDP등의 시설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2조제2호에서 명시한 “대관”의 유형(정기대관, 수시대관)에 따른 제출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DDP의 대관 제한에 관한 것으로 DDP등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행사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DDP 대관규정」 제15조에서 “대관신청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립극장 ‘대관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운영규정’에도 “대관신청의 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바, 안 제9조의 “대관 제한”을 대관 신청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대관신청 제한”으로 명시하는 것이 조례에서 제안하는 “대관 제한”의 의미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혼란의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 안 제10조는 DDP의 대관 허가에 관한 것으로, DDP등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의 유형(정기대관, 수시대관)에 따른 심의 결과 통지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11조는 허가한 DDP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안 제11조제3호의 ‘대관자가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는 최초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기준으로 허가 목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그 판단이 주관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관심의위원회’ 또는 별도의 수시자문단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12조는 DDP 대관자의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대관시설 및 설비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DDP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⑨ 대관료(안 제13조)

제13조(대관료) 시장은 대관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산정한 대관료를 부과·징수한다. 대관료 부과와 관련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13조는 DDP 대관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대관료 부과와 관련된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⁷⁾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과 제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

2항8)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를 정하여 매년 징수함이 원칙이며, 대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횟수별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동안 조례상의 근거 없이 서울시와 디자인재단의 「DDP 위·수탁 협약서」와 디자인재단의 「DDP 대관규정」에 따라 DDP 대관료를 부과해왔으므로, 「공유재산법」 준수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관료”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3조에서는 대관료의 하한(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을 규정하고 대관료 부과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198p)」에서 구체적인 사용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부과기준”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 또한, DDP 일부공간의 대관료는 매년 재산가액,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대관료가 수정될 수 있으므로, 대관료 부과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대관료 변경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

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⑩ 대관료 감면(안 제14조)

제14조(대관료 감면) 제14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행사등의 경우: 면제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주관하는 행사등의 경우: 20퍼센트 감액

- 안 제14조는 DDP 대관료의 감면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공유재산법」 제2조제7호에서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23.1.1일 이후 서울시 각 부서에서 DDP를 사용(대관, 임대 모두 포함)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이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 제14조제2호에서 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주관하는 행사등의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은

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타당하다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에 따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으나 그 기준 등을 정할 때는 서울시 다른 시설 및 감면요율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안 제14조제2호에서 명시하는 감면요율을 고정하거나 감면요율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⑪ 대관료 납부 및 반환(안 제15조)

제15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안 제15조는 DDP 대관료의 납부 기간과 반환에 관한 것으로, 안 제15조제1항은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8조에 따라 대관자는 대관 유형(정기대관, 수시대관)별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통해 DDP 대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DDP 대관 신청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재해 등 대관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처럼 대관료 납부 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그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⑫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제9조)

제1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설 대관의 허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대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된 후 해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사등 관련 전문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디자인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장은 심의 당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대관심의위원회(이하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¹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¹¹⁾에서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업무 특성상

10)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안 제16조에서 시설 대관의 허가 등을 위해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음

- 안 제17조는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을 두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므로, 위촉직 위원의 객관적인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 제17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위촉직 위원의 기준 및 자격을 규칙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
- 안 제18조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안 제18조제3항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의 최대인원이 5인일 경우 3인의 위원 참석시 개의할 수 있으며 2인의 찬성으로 대관심의가 결정될 수 있음. 이는 시설 대관의 허가등을 심의하는 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소 적은 인원이라 판단되므로,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되 심의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기존 디자인재단의 「DDP 대관규정」에서는 ▲정기대관 심의시 총 7인내외, ▲수시대관 심의시 총 5인내외의 위원으로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서울시의 여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조례¹²⁾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 인원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번

12)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의 수가 현저히 적으므로 향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는 대관 신청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안 제2조제2호에서 “대관”의 유형으로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8조에서 대관 유형(정기대관, 수시대관)별 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⑬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20조)

제2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안 제20조는 DDP등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DDP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디자인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해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DDP 운영·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법인·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⑭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 조례 시행은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이번 제정조례안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 제정 후 주차요금, 대관료 등과 관련한 상세 부과 기준 등을 위한 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만큼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다. 종합 의견

- 그동안 조례상의 근거 없이 서울시와 디자인재단이 체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재산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와 디자인재단의 「DDP 운영 규정」 및 「DDP 대관 규정」에 따라 서울시 행정재산인 DDP를 사용허가방식으로 대관·운영해왔음
- 서울시(감사위원회)의 디자인재단 기관운영 감사결과('23.02.24.)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DDP 시설 운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DDP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 DDP 사용료 규정을 두어 DDP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이번 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DDP를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그 설치 목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의 대관 및 관리·운영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DDP 설치 목적에 대한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제1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번 제정조례안에서 관람료, 대관료 및 주차료 부과에 관한 사항과 관람료 면제 및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면제 또는 감면의 대상과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서울시 다른 시설 및 감면 요율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안 제17조에서는 DDP 시설 대관의 허가등을 심의하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심의시 공정성을 기하기에는 다소 적은 인원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위원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심의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안 제18조에서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관 유형(정기대관, 수시대관)별 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부칙에서 조례 시행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은 조례 제정 후 주차요금, 대관료 등 상세 부과기준을 위한 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만큼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이번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디자인정책관) 및 디자인재단의 내부 규정만으로 관리·운영되어온 DDP에 대하여 ‘DDP의 설치 및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세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중인 여타 서울시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참고로 하여 관련 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비·마련해야 할 것임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운영 감사결과(23.02.24.)

- 행정재산을 시간별이나 횡수별로 사용하는 대관의 방식으로 사용허가 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시간별이나 횡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재단은 조례상의 근거없이 「위·수탁 협약서」 및 재단 「DDP 대관 규정」을 근거로 하여 행정재산인 DDP의 일부 공간을 대관시설로 정하고 시간별이나 횡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사실상 수의의 방법(대관 신청 및 심사)으로 사용허가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상의 근거 없이 「DDP 대관규정」을 근거로 DDP 대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 DDP 사용료 규정을 DDP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조례에 두어야 하며 별도 조례에 사용료 근거를 두는 경우 구체적인 사용료 기준을 해당 조례 별표에 두는 것은 가능함

○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재단(수탁자) 규정에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DDP 사용료 규정을 市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디자인재단 조례”) 제16조(수익사업)에 신설할 수는 없음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서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7조에서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칙상 市가 DDP를 설치해서 그 관리(사용료 징수 포함)에 관한 사항을 서울디자인재단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DDP 설치·사용료·위탁 등 기본적인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행정재산을

위탁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198쪽)에서 사용료의 금액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부과기준”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 市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市 도시공원 조례, 市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등 일반적인 규정 방법임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1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4.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16.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무료관람의 날로 운영한다.
1. 매월 넷째 주 일요일
 2. 설날, 추석, 어린이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경일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날 이외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가.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동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 나.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 100분의 30 감액. 다만,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 라. 서울특별시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트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연습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 나.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 다. 주 3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동시에 수강하는 자에게는 수강료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수강료를 감면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2수영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서남권 돛구장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 마.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사.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3.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

가. 시가 주최하는 경기·행사

나.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다.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

4.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나.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마.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바.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로 한정)가 주민 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사.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